



시 보



제1597호 2023. 5. 30.(화)

조 례

-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5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
-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17
-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19
-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6
-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 47
-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7
-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 목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78
-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규 칙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93
-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96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675 호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 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
2.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
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4.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견학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제7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

제8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기밀 유지) 교류협력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76 호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직근로자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및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아.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행위

3. “갑질행위자”란 갑질을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갑질을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목포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
- 4.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

계·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행위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거나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시장에게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서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

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77 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취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678 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가목 중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

자

나. ~ 자. (생략)

<신설>

2.·3. (생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3. (현행과 같음)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79 호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목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포시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지방행정동우회 분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80 호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와 그 산하 조직(동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 말한다.

제3조(지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681 호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놀이 프로그램 및 활동 자료 개발과 보급
4.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6.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7.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
- 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
-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 원칙)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 2.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 경비
-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 4.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82 호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청년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p> <p>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u>기획문화국장</u>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p>	<p>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p> <p>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u>기획청년국장</u>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p>
<p>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 <u>관광경제국장</u>,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신 설></p>	<p>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 <u>관광문화교육국장</u>,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⑩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83 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을 “기획청년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제2조(「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청년국장”으로 한다.

제3조(「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사업단장”을 “기획청년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맑은물사업단장”으로 한다.

제4조(「목포시 시보 발행에 관한조례」의 개정) 목포시 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보과”를 “홍보과”로 한다.

제5조(「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의 개정)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정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청년국장”으로 한다.

제7조(「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목포시 관광문화체육국장”을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청년국장”으로 한다.

제10조(「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체육 업무 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업무 담당 팀장”을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11조(「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시 경제산업국장”을 “목포시 지역상권발전업무 담당부서 국장”으로 한다.

제12조(「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상정담당주사”를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13조(「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경제수산물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4조(「목포시 에너지기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경제산업국장”을 “기획청년국장, 경제수산물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5조(「목포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담당주사”를 “도시디자인과장,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16조(「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사업단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17조(「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광문화체육국장”을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8조(「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소관국장”을 “소관 국·단장”으로 한다.

제19조(「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생관리담당”을 “기금운용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생관리담당”을 “기금운용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0조(「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청년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1.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1. 기획청년국장 ,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회구성) ① -----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제8조(심의회구성) ① ----- -----부위원장은 기획청년국장 이 된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체육	제1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청년국장 ,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

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도시 건설국장, 보건소장, 환경수도 사업단장이 되고-----.	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맑은 물사업단장 이 되고-----.
--	--

**목포시 시보 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료통보) ① (생 략) ②통보된 자료는 공보과에서 업 선하여 게재한다.	제6조(자료통보) ① (현행과 같 음) ②통보된 자료는 홍보과 에서 업 선하여 게재한다.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서기는 행정정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서기는 주무팀장 이 된 다.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	제5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

성·운영) ① · ② (생략)	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③----- 기획청년국장 , 자치행정복지국장,-----.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 ④ (생략)	제2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서기는 주무담당이된다.	⑤---, 서기는 주무팀장 이된다.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운영 등) ① (생략)	제3조(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 중 목포시장과 목포시 관광문화체육국장은-----.	②이사 중 목포시장과 관광문화교육 국장은-----.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1. 기획관리국장, 교육지원업무담 당 국·단장.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1. 기획청년국장 , 교육지원업무담 당 국·단장.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 업무 국장이 되고-----.	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이 되고-----.
제12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 이 된다.	제1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소관 팀장 이 된다.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 경제산업국장.

② -----, 목포시 지역상권발전업무 담당부서 국장.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 위원장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상정담당주사가 되며,-----.	제26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소관팀장이 되며,-----.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의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③ -----, 부위원장은 관광경제수산국장으로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위원장은 경제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 기획관리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③ · ④ (생략) 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 서기는-----.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획청년국장 , 경제수산환경국장 으로 하고-----.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기후환경과장 , 서기는-----.
---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 이 되고 서기는 소관팀장 이 된다.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하며-----.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으로 하며-----.

③위원중 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과장,건설과장은-----.

③위원중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건설과장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관광문화체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문화교육국장 , 안전도시건설국장, -----.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① ~④ (생 략) ⑤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① ~④ (현행과 같음) ⑤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국· 단장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①----- -----. 1.·2. (생 략) 3. 기금출납 공무원: 위생관리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①----- -----. 1.·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 공무원: 기금운용

<p>담당</p> <p>제4조(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 간사는 위생관리 담당주사가 된다.</p>	<p>담당팀장</p> <p>제4조(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팀장이 된다.</p>
--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기획관리국장,----- -----.</p>	<p>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기획청년국장,----- -----.</p>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84 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에”를 “법 제103조의3제1항에”로 한다.

제7조 중 “매각예정가격을”을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액을”으로, “재산과”를 “예술품등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해”로, “재산에 대하여”를 “경우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산은”을 “예술품등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에”를 “시행규칙 제73조의8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매각추산가액에”를 “매각예정가액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 예술품등에 대해 -----

----- 경우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

예술품등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 시행규칙 제7
3조의8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생략)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
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매각예정가액에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685 호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을 “축제장 및 경기장 이용과 방문객”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2호의 지역 축제장”을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으로, “관광객”을 “관람객”으로 한다.

- 3. “경기장”이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4조 중 “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을 “축제장 및 경기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 <u>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u>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u>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u>을 말한다.</p> <p>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 <u>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u>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p>	<p><u>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축제장 및 경기장 이용과 방문객</u>-----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경기장”이란 <u>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경기장</u>을 말한다.</p> <p>4. “이용자”란 지역 <u>축제장 및 경기장</u>--- <u>관람객</u>----- --.</p> <p>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 --- <u>축제장 및 경기장을 방문하는 이용자</u>----- ----- ----- -----.</p>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
 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
 자로 제한한다.

제5조(이용 대상자) -----
 ----- 제2조제4호-----
 -----.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86 호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강화와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는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

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목포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목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목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시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
- 2. 목포시의회 의원
-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2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건축물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립을 할 수 있다.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목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확정된 목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목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제11조에 따른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표창)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목포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687 호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

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장은 목포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당연직 단원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④ 위험도 평가단의 위촉직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별지 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시: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 표시: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표시: [별지 제5호서식]
4. 추가점검예정 표시: [별지 제6호서식]

⑥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일	
------	--	-----	--

성명		생년월일	
----	--	------	--

소속		직급	
----	--	----	--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61-270-8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 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일시 :
- 위험요소 : 구조체(000,000), 낙하물(000, 000)
- 점검의견 : 000 주의 필요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1-270-8242]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 시 유의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주의사항 : 000 주의 필요
- 점검의견 : 000 조치 시 사용가능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결과입니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1-270-8242]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가능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일시 :
- 평가의견 : 000 조치 필요
-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1-270-8242]

210mm×297mm

[별지 제6호 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추가점검 예정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주의사항 : 000 주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이며,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1-270-8242]

210mm×297mm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88 호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④ (생략)</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89 호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5조제1항 제1호나목”을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로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목포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 음주 · 야영 · 취사 · 방노행위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p> <p>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p> <p><신 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p>	<p>제2조(정의) ----- ----- -----.</p> <p>1. ----- ----- --제15조제1호나목----- ----- -----.</p> <p>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 -----.</p> <p>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 ----- 「주택건설</p>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② (생략)

<신설>

<신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목포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야영·취사·방노행위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

<p><u>제5조</u> ~ <u>제10조</u> (생 략)</p>	<p>5. <u>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u> 6. <u>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u> 7. <u>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u></p> <p><u>제6조</u> ~ <u>제11조</u> (현행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p>
---------------------------------------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690 호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u></p> <p><u>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u></p> <p><u>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u></p>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 소 년 · 군 인	1,000원	700원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투경찰 순경, 경비 교도
초 등 학 생	500원	500원	7세 이상 12세 이하
유 치 원 생	무료	무료	6세 이하

※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며 어른, 청소년·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리고, **관람료 징수 최소비용은 500원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나이 계산 기준은 관람년도 - 출생년도로 한다.**

목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91 호

목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목포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목포시 소속 공무원
-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 할 때는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행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분쟁 조정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 성립)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제3항에 의하여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7. 조정 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8.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정이 거부·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0조제2항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0조제3항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 3.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 4. 그 밖에 중요사항

제14조(비용부담)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3.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한 날 또는 조정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정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분 쟁 대 상 공 동 주 택 현 황	공동주택명		세대수	세대
	주 소			
신 청 내 용				
신 청 취 지 및 사 유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신 청 내 용				
공 동 주 택 분 쟁 조 정 내 용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결 통보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거 부·중 지 및 종 결 사 유				
<p>「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p> <p>(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692 호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이용료) ①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용료 및 제2항의 체험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 설>

1. 도시재생시설물 이용료(제10조의3 관련)

명 칭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목포 모자아트 갤러리	어 른	2,000원	1,5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 소년 학 생 군 인 경 찰	1,000원	700원	•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 휴가증을 소지한 현역, 경찰
	초 등 학 생 이 하	무 료	무 료	• 12세 이하

※ 목포시에 거주자에 대하여는 개인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며, 이는 주민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 한다.

2. 도시재생시설물 체험비(제10조의3 관련)

명 칭	구 분	금 액
목포 모자아트갤러리	모자 자수 각인 체험	• 모자 원가 + 재료비(1,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조의3(이용료) ①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이용료 및 제2항의 체험비는 별표1과 같다.</p>																										
<p><신 설></p>	<p>[별표1]</p> <p>1. 도시재생시설물 이용료(제10조의3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명 칭</th>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금 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개 인</th> <th>단 체 (2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목포 모자 아트 갤러리</td> <td>어 른</td> <td>2,000원</td> <td>1,500원</td> <td>• 19세 이상 64세 이하</td> </tr> <tr> <td>청 소 년 학 생 군 인 경 찰</td> <td>1,000원</td> <td>700원</td> <td>•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 휴가증을 소지한 현역 경찰</td> </tr> <tr> <td>초·중·고·대학생 이하</td> <td>무료</td> <td>무료</td> <td>• 12세 이하</td> </tr> </tbody> </table> <p>※ 목포시에 거주자에 대하여는 개인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며, 이는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 한다.</p> <p>2. 도시재생시설물 체험비(제10조의3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명 칭</th> <th>구 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목포 모자 아트갤러리</td> <td>모자 자수 각인 체험</td> <td>• 모자원가 + 재료비(1,000원)</td> </tr> </tbody> </table>	명 칭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목포 모자 아트 갤러리	어 른	2,000원	1,5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 소 년 학 생 군 인 경 찰	1,000원	700원	•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 휴가증을 소지한 현역 경찰	초·중·고·대학생 이하	무료	무료	• 12세 이하	명 칭	구 분	금 액	목포 모자 아트갤러리	모자 자수 각인 체험	• 모자원가 + 재료비(1,000원)
명 칭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목포 모자 아트 갤러리	어 른	2,000원	1,5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 소 년 학 생 군 인 경 찰	1,000원	700원	•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 휴가증을 소지한 현역 경찰																							
	초·중·고·대학생 이하	무료	무료	• 12세 이하																							
명 칭	구 분	금 액																									
목포 모자 아트갤러리	모자 자수 각인 체험	• 모자원가 + 재료비(1,000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규칙 제 1852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만 18세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자. 단, 만 18세 미만인자 ”를 “ 18세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자. 단, 18세 미만인자”로 한다.

제2조(「목포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목포시환경

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자격) 도서의 관외대출은 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p> <p>1. 만18세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자. 단, 만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p>	<p>제16조(자격) 도서의 관외대출은 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p> <p>1. 18세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자. 단,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p>

**목포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환경미화원의 자격) (생략)</p> <p>1. 채용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p>	<p>제4조(환경미화원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1. 채용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p>
<p>제13조(퇴직일 및 정년) (생략)</p> <p>③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p>	<p>제13조(퇴직일 및 정년) (생략)</p> <p>③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p>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0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규칙 제 1853 호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목포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

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기초금액 1억원 미만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 및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제외)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 2. 대체 징수 결정
-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

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
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
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
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사업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서의 장이 서기관 직제인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인건비
-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3. 여비
- 4. 직무수행경비
- 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3, 훈령 제 12조제 2항의 경우 별표4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소규모 공사·제조·용역·임차·인쇄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로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같음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면,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	부 청	의 회	제1관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기타관서일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임 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	-	
경 수 관	예산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 일 경 수 관	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의수입 주관 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예산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일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팀장 또는 담당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정·징수·세의수입 업무팀장 세의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의정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	재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	각 과 서무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	재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세 입 세 출 의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	재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총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의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보 건 소 의회사무국	지출원이 없는 관서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기타 경비	전액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기획예산과장)	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액	